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 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 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의2제1항제2호의 비위(나목 및 다목에 따른 비위는 제외 한다) 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 한 규정」 제6조의2, 제10조,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 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및 「지방공무원법」 제46 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실비보 상 중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 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라.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 해 마. 부작위· 직무태만(바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 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 른 소극행정 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 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 위 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	[별표 1의2]와 같음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조에 따른 부정청탁 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 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차. 「공무원 행동강령」 제13 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카.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 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타. 성 관련 비위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파.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 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 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취·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2]와 같음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 관련 비위	별표 2의2와 같음			
나. 삭제 <2021. 8. 27.>				
다. 삭제 <2021. 8. 27.>				
라. 삭제 <2021. 8. 27.>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별표 3]과 같음			
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사.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고

- 제1호가목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 제1호가목의 비위와 같은 호 나목 또는 다목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 제1호나목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 제1호마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제1호타목에서 "피해자 등"이란 성 관련 비위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3조제3호가목·나목에 따른 피해(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말하며, 2차 피해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호가목을 적용한다.
- 제1호파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

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무원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7. 제7호바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공무원

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직원

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